

숙박시설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남해안관광벨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ople in Accommodations - Tourist belt area of southern sea in Korea -

김현태*
Kim, Hyun-Tae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nd analyze convenience of the disabled people to use the facilities in accommodations.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has been obtained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According to the survey,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disabled people with a wheel chair to access to the room because of the staircase, doorsill and the narrowed passage. Also, there was no the grab bar, braille blocks and exclusive elevators for the disabled. Moreover, it was not easy for them to access to the bedroom since there was a doorsill and a serious height difference between the lobby and the bedroom. It was shown that the disabled people also have a difficulty in using the toilet and the bathroom, because the width of door and floor height was not suitable for the design criteria. In the toilet, there was no handle on a chamber pot for the disabled people to hold, and the space was not enough for them to access to the pot and turn with a wheel chair.

Keywords : the handicapped, convenient facilities, wheel chair

주요어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지체장애인 출현 비율은 교통사고, 노동재해, 스포츠사고 등의 발생원인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신체적 운동능력의 저하에 의하여 일상적 생활을 위한 이동능력이 어려운 노인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물리적인 환경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권, 이동권 그리고 접근권에 대한 권리의 도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주5일 근무제 도입, 고속도로 확충, 고속전철 개통 등으로 말미

암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남해안지역은 1999년 문화관광부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도시관광권, 통영중심의 해양·레저스포츠관광권, 여수중심의 종합휴양관광권, 목포중심의 역사문화관광권 등 4개 권역으로 개발하는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의 사회적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있어서 해양·레저스포츠관광지, 휴양관광지, 문화유적관광지 등 어느 곳이라도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어 남해안 해양휴양관광지의 주변 숙박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접근성 및 주거이용에 적합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정회원, 여수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남해안관광벨트 중 휴양관광지로서 보성군, 여수시, 남해군,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숙박시설로서 호텔 6개소와 모텔 8개소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시설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조사시기는 2003년 11월 11일부터 2003년 12월 5일까지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4년 1월 10일부터 2004년 1월 28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 2월 2일부터 2004년 2월 8일까지 보충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시설의 개요

| 조사대상시설 | 소재지 | 건 물 | | | |
|--------|-----|-----|----|-----|-----|
| | | 지하 | 지상 | 객실수 | |
| 호텔 | B | 여수 | 1 | 8 | 58 |
| | S | 여수 | 1 | 7 | 52 |
| | L | 부산 | 5 | 43 | 806 |
| | SY | 부산 | 1 | 8 | 46 |
| | H | 부산 | 6 | 22 | 321 |
| | P | 부산 | 2 | 16 | 250 |
| 모텔 | R | 보성 | | 3 | 24 |
| | C | 여수 | 1 | 4 | 30 |
| | A | 여수 | | 6 | 34 |
| | B | 여수 | 1 | 6 | 36 |
| | SJ | 상주 | | 4 | 41 |
| | D | 상주 | | 3 | 21 |
| | SK | 부산 | 1 | 6 | 42 |
| | H | 부산 | 1 | 7 | 44 |

조사내용 및 방법은 접근편의시설로서 현관·복도·승강기, 주거이용편의시설로서 객실·화장실 및 욕실, 기타편의시설로서 접수대·장애인전용주차장 등으로 구분하여 지체장애인의 접근성 및 적합한 주거이용을 고려한 관찰조사와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분석방법은 국내 편의시설 기준과 비교·검토하였으며, 실측평가 및 이항분류로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1) 지체장애인의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장애유형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표 2>와 같이 장애인의 출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지체장애인 수도 매년 증가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 편의시설의 개념 및 분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관련법의 개정과 변천과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3조에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란 것으로 처음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의 내용이 없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6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1997년 4월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672호) (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으며, 1997년 12월과 1999년 1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는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을 <표 3>과 같이 분

표 2. 전국 지체장애인 등록수 현황 (단위: 명, %)

| 연도 | 인구수 | 장애인수 | 지체장애인수 | 장애인출현율(인구/장애인수) | 지체장애인출현율(장애인수/지체장애인) |
|------|------------|-----------|---------|-----------------|----------------------|
| 1995 | 45,093,000 | 324,860 | 220,723 | 0.72 | 67.94 |
| 1996 | 45,545,000 | 362,475 | 248,690 | 0.79 | 68.86 |
| 1997 | 45,991,000 | 425,064 | 294,419 | 0.92 | 69.26 |
| 1998 | 46,430,000 | 527,250 | 371,328 | 1.13 | 70.42 |
| 1999 | 46,850,000 | 697,513 | 502,647 | 1.48 | 72.06 |
| 2000 | 47,976,730 | 958,196 | 606,422 | 2.0 | 63.29 |
| 2002 | 48,289,173 | 1,178,471 | 701,565 | 2.44 | 59.53 |

자료: 통계청(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표 3.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 시설 | 내용 |
|-----------|-------------------------|
| 근린생활시설 | 근린공공시설 |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 판매 및 영업시설 | 종교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
| 의료시설 | 종합병원 |
| 교육 및 복지시설 |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수련 시설 |

류하고 있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는 지방의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분석을 한 장순익(2003)¹⁾, 황용운(2002)²⁾의 것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다중의 공공성이 높은 청사, 경찰서, 교육청, 공공도서관, 세무서 등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공공건축물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들이다.

III. 연구 결과 및 분석

1. 모델

1) 접근편의시설

<표 4>는 모델의 접근편의시설의 기준 및 설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① 현관

출입구 폭 및 전면유효거리는 의무사항 규정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출입구 부분의 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시설 8개소 중 7개소에 문턱이나 계단 <그림 1 참조>이 설치(87.5%) 되어 있어 휠체어사용자의 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단차이를 해소해야 하나 외부로부터 물의 유입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구멍이 뚫린 철망으로 된 排水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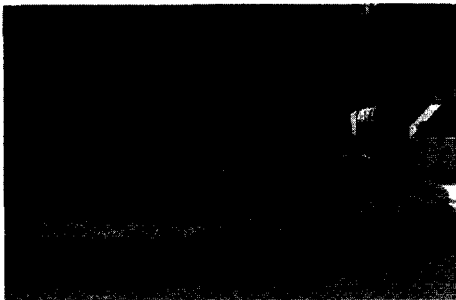


그림 1. 모델출입구 계단 설치 사례

1) 장순익(2003),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5)
2) 황용운(2002), 중소도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2(2)

설치로 처리될 것이다.

② 복도

모든 시설이 중복도였으며,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히 U자 회전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 및 보행자 한사람과 스쳐지나갈 수 있는 유효폭인 1500 m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은 7개소(87.5%)로 조사되었다.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배려되지 않았으며, 복도 측면에 연속으로 설치해야할 손잡이도 전혀 설치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하거나 보행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의 이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승강기

지체장애인에게 수직이동으로 가장 이동이 편리한 수단으로써 승강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시설 중 4개소밖에 설치(50.0%)되지 않았다. 출입구 폭은 의무사항 규정에 미달되는 곳이 2개소(50.0%)였으며, 승강기바닥과 승강장바닥의 틈이 30 mm 이하로 해야 하는 규정을 3개소(75.0%)가 준수하고 있지 않아 휠체어의 바퀴가 틈에 끼어 이동에 지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바닥면적에 대해서도 1개소 밖에 지키지 않았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조작판 높이 및 후면에 거울부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 등은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승강기는 휠체어사용자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하며, 조작용 버튼의 사용이 어렵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거이용편의시설

<표 5>는 주거이용편의시설 기준 및 설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① 객실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6개소(75.5%)가 설치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출입구의 문턱은 6개소에 설치(75.5%)되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휠체어로 넘을 수 있는 단 차이를 보통 2 cm라고 하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1 cm에서도 힘든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침실 안으로 올라서는 경계턱의 단 차이가 1.5~16.5 cm 사이의 치수로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림 2 참조>, 10 cm 정도가 넘는 단 차이를 보이는 곳도 4개소(50%)나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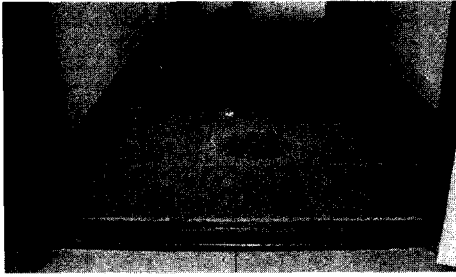


그림 2. 객실의 출입구 문턱 및 바닥면 단차사례

어 휠체어사용자의 진입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보행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바닥단차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복도와 동일한 레벨로 해소해야 된다.

침대높이는 휠체어 좌면높이와 동일한 400~450 mm를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대부분 준수되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규정에는 없지만 침대의 상반분 혹은 하반분을 전동으로 오르내림의 각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gatch bed는 조사대상시설에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침대 측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서 1200 mm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변가구의 개폐유형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사용 시 활동공간을 좁게 하므로 미서기문으로 된 가구를 설치해야 된다.

바닥재는 미끄러짐 방지 재질로 마감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닐 장판으로 모두 마감되어 있어 신체기능이 저하된 장애인의 미끄러짐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휠체어사용자를 배려한 바닥재로서 미끄러지지 않으며, 주행성이 좋고, 흠이 나지 않은 코르크계나 목질계의 바닥재 설치를 권장한다.

객실의 출입문 옆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객실명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

② 화장실 및 욕실

주거공간 사용자에게 있어서 세면, 배설, 샤워, 목욕 등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지체장애인에 있어서는 주거생활 중 가장 어려운 활동일 것이다. 장애인이 주거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공간을 원활히 정비해야 될 것이다.

위생공간 구성의 유형은 침실에 부속된 위생시설(변기+세면기+욕조)이 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출입문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건물 중 모두 여닫이문(100%)이었다. 특히 안쪽여닫이문은 욕실내에서 지체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열수 없게 되며, 안쪽의 공간을 좁게 한다. 유효폭도 7개소(87.5%)가 편의시설 기준치 80 cm 이상보다 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히려 휠체어폭 66 cm보다 좁은 곳이 6개소(75.0%)나 되었다.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 cm에서 17 cm까지 모든 시설에 설치(100%)되어 있었다. 이는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이 침실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문턱을 설치하고 있으나, 구멍이 뚫린 철망으로 된 排水溝 <그림 3 참조>를 문의 욕실 측에 설치함으로써 단 차이를 없애게 되며, 휠체어사용자나 보행 장애자의 이용이 용이해 질 것이다. 또한 욕실바닥은 모든 시설이 자기타일로 설치되어 있어서 물에 젖으면 신체기능이 저하된 지체장애인의 경우 미끄러져 사고발생의 염려가 있었다.

미끄러짐 방지용 발포폴리에틸렌제 욕실매트를 깔아서 미끄러짐사고를 예방해야 될 것이다.

욕조를 설치한 곳은 5개소(62.5%)이며, 3개소(37.5%)는 샤워기만 설치되어 있었다. 욕조 턱은 휠체어 좌면높이와 동일한 40~45 cm 보다 월등히 높아서 욕조전면에 휠체어 좌면높이와 동일한 이동좌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휠체어로부터 욕조로의 이동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동용 좌대도 모



그림 3. 욕실입구의 철망 排水溝

든 시설에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육조로의 이동을 위한 손잡이도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양변기 주변의 손잡이는 모든 시설에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양변기의 좌우측에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해 유효폭 750 mm 이상의 활동공간 및 양변기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될 권장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

3) 기타 편의시설

접수대의 경우 편의시설 기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상단까지의 높이가 0.7~0.9 m로 해야 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 m 이상, 깊이 0.4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한 시설은 1개소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전혀 설정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건축물 출입구와 멀리 떨어져 설치돼 있어 장애인의 출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 호텔

1) 접근편의시설

<표 6>은 호텔의 접근편의시설의 기준 및 설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① 현관

출입구 문턱은 2개소(25.0%)를 제외한 대부분 건물에서 출입구 문턱이나 계단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이 배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호텔의 현관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출입구부분에 排水溝를 설치하므로 단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혹은 이미 건설된 건축물에는 간이철판경사로<그림 4 참조>를 설치하여 단 차이를 해소해야 될 것이다.

② 복도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전면에 설치해야



그림 4. 현관출입구간이철판경사로

표 6. 호텔의 접근편의시설 기준 및 설치현황

단위 : mm

| 시 설 | | 편의시설기준 | B | S | L | SY | H | P | |
|-------|--------------------|-------------------------|--------|------|------|------|------|------|------|
| 현 관 | 출입구 폭 | 800이상 | 1800 | 1800 | 1730 | 1800 | 1840 | 1740 | |
| | 출입구 턱 |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됨 | × | 680 | 100 | 1015 | 130 | × | |
| | 전면유효거리 | 1200이상 | 2410 | 1440 | 2730 | 3730 | 3420 | 2330 | |
| 복 도 | 폭 | 중복도 1500이상 | 1580 | 1350 | 1845 | 1520 | 1560 | 2000 | |
| | 점형블록 | 계단, 장애인용승강기, 화장실 전면에 설치 | × | × | × | × | × | × | |
| | 손잡이 | 측면에 연속하여 설치 | × | × | × | × | × | × | |
| 승 강 기 | 출입구 폭 | | 800 | 790 | 1100 | 780 | 1110 | 1090 | |
| | 승강장바닥과의 틈 | 30이하 | 35 | 40 | 40 | 38 | 33 | 33 | |
| | 바닥 | 폭 | 1100이상 | 1400 | 1400 | 2095 | 1400 | 2100 | 1870 |
| | | 깊이 | 1350이상 | 1100 | 1020 | 1655 | 1350 | 1700 | 1400 |
| | 휠체어사용자의 조작판 높이 | 850내외 | 1230 | 1330 | 1045 | 1050 | 1040 | 940 | |
| | 점자표지판 | 조작판에 점자표지판 부착 | × | × | × | ○ | × | × | |
| 거울부착 | 후면에 거울부착 | × | × | × | ○ | ○ | ○ | | |
| 수평손잡이 | 내부에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 ○ | ○ | ○ | ○ | × | ○ | | |

할 점형블록이나 복도 측면에 연속하여 설치해야할 손잡이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지체장애인의 주거이동편의시설로의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③ 승강기

출입구 유효폭,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 30 mm 이하, 바닥면적 등의 편의시설 기준은 모델의 경우와는 달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그러나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내부 조작판 높이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은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주거이용편의시설

<표 7>은 주거이용편의시설 기준 및 설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① 객실

출입구 폭이 기준에 미달되는 건물이 3개소(37.5%)로 조사되었으며, 문턱은 2개소(25%)에 설치되어 있었다.

침대높이는 휠체어 좌면 높이 40~45 cm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되어야 휠체어사용자가 침대로 이동이 편리하나, 모델과는 달리 50 cm 이상인 곳이 5개소(83.3%)에 달하였다. gatch bed는 조사대상시설에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표 7. 호텔의 주거이용편의시설 기준 및 설치현황

단위 : mm

| 항 목 | | 시 설 | 편의시설기준 | B | S | L | SY | H | P | |
|----------|-------------|------------------|----------------------|---------------------|--------|--------|--------|------|--------|-----|
| 객실 | 출입구폭 | | 800이상 | 780 | 720 | 810 | 750 | 810 | 810 | |
| | 출입구단차 | |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됨 | × | × | × | 35 | 5 | × | |
| | 침대높이 | | 400~450 | 580 | 540 | 500 | 510 | 470 | 560 | |
| | 침대측면휠체어회전공간 | | 침대 측면에 1200이상 활동공간확보 | 780 | 2900 | 1170 | 1120 | 1320 | 1870 | |
| | 바닥단차 | |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됨 | 100 | × | × | × | 5 | × | |
| | 바닥재 | | 미끄러짐 방지재질 | 양탄자 | 플로어링 | 양탄자 | 양탄자 | 양탄자 | 양탄자 | |
| | 방이름 점자표지판 | |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해야함 | × | × | × | × | × | × | |
| 화장실 및 욕실 | 출입문 | 출입문형태 |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 안쪽 여닫이 | 안쪽 여닫이 | 안쪽 여닫이 | 안쪽 여닫이 | × | 안쪽 여닫이 | |
| | | 출입구폭 | 800이상 | 800 | 580 | 680 | 610 | 700 | 690 | |
| | | 출입구단차 |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됨 | 70 | 25 | 35 | 150 | × | 10 | |
| | 대변기 | 양변기좌대높이 | | 400~450 | 420 | 430 | 395 | 410 | 420 | 400 |
| | | 손잡이높이 | 수평 | 600~700 | × | × | × | × | × | × |
| | | | 수직 | 900 이상 | × | × | × | × | × | × |
| | | 휠체어측면접근폭 | 좌측 | 휠체어 측면 접근폭 750이상 확보 | 1120 | 70 | 400 | 210 | 230 | 290 |
| | | | 우측 | | 210 | 800 | 800 | 970 | 250 | 320 |
| | 휠체어회전공간넓이 | 가로 | 1400×1400이상 활동공간 확보 | 1689 | 1580 | 1660 | 1540 | 790 | 1350 | |
| | | 세로 | | 860 | 920 | 630 | 660 | 840 | 970 | |
| 세면기 | 높이 | 상단 | 850이하 | 760 | 800 | 810 | 800 | 785 | 810 | |
| | | 하단 | 650이상 | 650 | 620 | 640 | 690 | 540 | 500 | |
| | 양옆수평손잡이설치 | 양옆에 수평손잡이 설치 | × | × | × | × | × | × | | |
| 거울상단경사 | | 15°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 × | × | × | × | × | × | | |
| 욕조 | 높이 | | 400~450 | × | 520 | 520 | 450 | 380 | 350 | |
| | 손잡이 | 수평 | 설치해야함 | × | × | × | ○ | × | ○ | |
| | | 수직 | | × | × | × | × | × | × | |
| | 부착좌대 | | 휠체어로부터 욕조로 이동좌대설치 | × | × | × | × | × | × | |
| 비상벨 | | 비상상태에 대비하여 비상벨설치 | × | × | ○ | ○ | × | ○ | | |

침대측면의 휠체어 회전공간은 인접한 곳에 tea table이나 수납가구 등이 설치되어 기준치 1200 m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3개소(50.0%)로 조사되었다.

바닥면 단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침실 안으로 올라서는 경계턱이 2개소에 설치(33.0%)되었으나, 그 외 시설은 복도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되었다. 바닥재는 5개소(83.3%)가 주행성이 떨어지는 양탄자로 설치되어 휠체어의 이동에 불편이 예상되며,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이동력이 떨어진 지체장애인의 피난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휠체어사용자를 배려한 바닥재인 코르크계나 목질계의 설치를 권장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객실명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은 모든 시설에 설치되지 않았다.

② 화장실 및 욕실

호텔도 모텔과 같이 위생공간의 구성유형이 침실에 부속된 위생시설(변기+세면기+욕조)이 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출입문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설치가 권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개소(83.3%)가 안쪽여닫이로 설치되었다. 그 외 1개소는 <그림 5>와 같이 출입문과 문턱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전실이 설치되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휠체어사용자의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출입구 폭은 5개소(83.3%)가 기준치보다 좁았다. 출입구 문턱은 5개소(83.3%)에 설치되었다<그림 6 참조>.

휠체어사용자나 보행 장애인이 양변기로 이동편의를 위한 수직 및 수평손잡이는 조사대상시설 6개소(100%)에 설치되지 않았으며, 또한 휠체어의 측면 접근폭 및 회전공간넓이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원인은 <그림 6>과 같이 변기, 세면기, 욕조가 조합된 형태로서 면적이 협소하여 서로 붙어있다고 설치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7>과 같이 욕실과 화장실을 각각 전용실로 따로 설치하여 휠체어사용자의 이용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세면기 높이는 상단의 경우 850 mm 이하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대로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하단은 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65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 곳은 2개소 밖에 설치(33.3%)되지 않았다. 양옆 수평손잡이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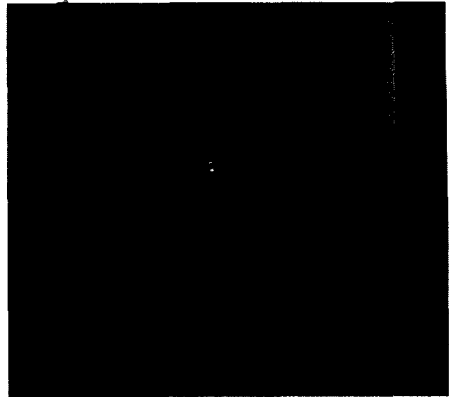


그림 5. 호텔 화장실 출입문 단차無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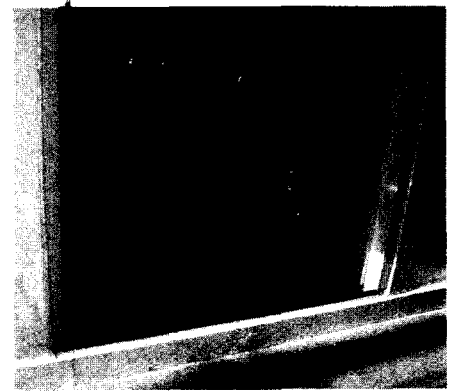


그림 6. 호텔 화장실 출입문 단차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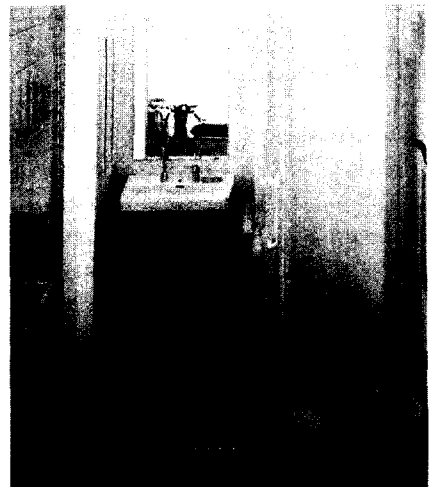


그림 7. 호텔의 욕실과 화장실 전용실 설치사례

표 8. 호텔의 기타 편의시설 기준 및 설치현황

단위: mm

| 항 목 | | 시 설 | 편의시설 기준 | B | S | L | SY | H | P |
|-----|----------|----------------|---------------|-----------|-----------|-----------|-----------|-----------|-----------|
| 접수대 | 접수대 상단높이 | | 700~900 | 1090 | 1000 | 1260 | 1080 | 1190 | 765 |
| | 접수대 하부공간 | 높이 | 650 이상 | 950 | 310 | × | × | × | 703 |
| | | 깊이 | 450 이상 | 160 | 100 | × | × | × | 180 |
| 주차장 | 크기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3300×5000이상 | 3240×4940 | 2200×5600 | 2210×4800 | 1800×4770 | 2100×5500 | 3350×5500 |
|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평행) | 2000×6000이상 | × | × | × | × | × | × |
| | 바닥재질 | | 미끄럼방지재질, 평탄마감 | | 아스팔트마감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상단에 경사진 거울의 설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욕조를 설치한 곳은 5개소(83.3%)이며, 1개소(16.6%)는 샤워기만 설치되어 있었다. 욕조 턱은 휠체어 좌면높이와 동일한 40~45 cm에 적합한 높이로 설치된 곳은 1개소(20.0%)밖에 없었다. 욕조전면에 휠체어 좌면높이와 동일한 이동좌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휠체어로부터 욕조로의 이동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용 좌대도 모든 시설에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원활한 욕조 출입을 위한 손잡이도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욕실내에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상벨은 3개소(50.0%)만이 설치되어 지체장애인의 입욕행위 중 비상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타 편의시설

<표 8>은 기타 편의시설 기준 및 설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접수대의 상단높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시설은 5개소(83.3%)였으며, 하부규정은 3개소(50%)가 준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장은 조사대상시설 6개소 모두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정되었으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인 3300×5000 mm 이상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1개소(16.7%)에 불과해 장애인 주차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바닥재질은 5개소(83.3%)가 콘크리트로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라고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서 남해안관광벨트의 휴양관광지 주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토대로 장애인의 접근성 및 주거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호텔의 접근편의시설은 현관의 경우 출입구 부분에 문턱이나 계단이 설치되어 휠체어사용자의 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출입구 부분에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排水溝를 설치하여 단 차이를 해소해야 될 것이다. 복도의 경우 휠체어사용자가 이동에 필요한 유효폭을 확보되지 못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배려한 점멸블록이나 보행 장애인을 위한 복도 측면에 설치해야할 손잡이도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둘째, 호텔의 주거이용편의시설은 객실의 경우 출입구 문턱이나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침실 안으로 올라서는 경계턱이 설치되어 있어 침실내부로 휠체어사용자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바닥재는 미끄러지기 쉬운 비닐 장판으로 마감되어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그다지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휠체어사용자를 배려한 코르크계나 목질계의 바닥재 설치를 권장한다. 화장실 및 욕실의 경우 유효폭이 휠체어폭보다 좁아서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욕실 바닥은 물에 젖으면 미끄러운 자기타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끄러짐 방지용 발포폴리에틸렌제 욕실매트를 깔아서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 욕조 턱은 휠체어 좌면높이보다 높아서 휠체어로부터 욕조로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있으며, 욕조로 이동을 위한 손잡이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보행 장애인의 접근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양변기 이용에 관한 편의시설로서 주변 손잡이·좌우측에 휠체어측면의 접근을

위한 활동공간·전면에 휠체어 회전가능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웠다.

셋째, 호텔의 접근편의시설은 현관의 경우 출입구에 문턱이나 계단이 설치되어있어 排水溝나 간이철 판경사로를 설치하여 단 차이를 해소시켜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하게 해야 된다. 복도의 경우 점형블록이나 손잡이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 및 지체장애인의 주거이동편의시설로의 접근이 어렵게 되어있다.

넷째, 호텔의 주거이용편의시설은 객실의 경우 침대높이가 휠체어 좌면 높이와 다르게 설치되어 휠체어사용자가 침대로 이동이 불편하게 되어있다. 침대 측면 휠체어 회전공간은 인접한 곳에 tea table이나 수납가구 등이 설치되어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바닥재는 주행성이 떨어지는 양탄자로 설치되어 휠체어 이동에 불편이 예상되며,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하여 지체장애인의 피난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코르크계나 목질계의 바닥재 설치를 권장한다. 양변기로 이동편의를 위한 수직 및 수평손잡이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휠체어측면 접근폭 및 회전공간넓이도 확보되지 않았다. 이 원인으로는 위생공간의 면적이 협소하여 서로 붙어있다시피 설치되었기 때문에 욕실과 화장실을 각각 전용실로 설치하여 휠체어사용자의 이용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세면기는 하단에 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으며, 양옆 수평손잡이와 상단에 경사진 거울의 설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호텔의 기타 편의시설로서 접수대의 경우 상하단 높이가 편의시설 기준에 준수되지 않아서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어렵다.

이상의 숙박시설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계획·설계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숙박시설을 편의시설 기준에 준해 개선이 필요하며, 추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체장애인이 선진적인 여가 및 레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양휴양관광지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1. 보건복지부(199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한국복지 산업연구소(1999),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해설”.
3.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건 복지심의관(2000), “장애인복지 사업지침”.
4. 김경일, 최창렬, 안옥희(1998), 고령자용 실내계단 디자인에 관한 인간공학적 실험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 9권 3호
5. 권오정(2000), 치매성 노인을 위한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I), 한국주거학회지 제 11권 2호.
6. 정사회, 김상호(2000), 아파트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 11권 4호.
7. 장순익(2003), 장애인의 접근을 고려한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실태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9권 5호.
8. 이인수(2003),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게 된 이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 14권 2호.
9. 오영근(1998), 인체척도에 의한 실내공간 계획, 국제.
10. 박을중(1999), 미국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한국맹인복지연합회.
11. 박을중(1999), 일본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한국맹인복지연합회.
12. 권원용(2001), 미국장애인 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2002), 편의시설 매뉴얼교육.
14. 강병근(2001),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보건복지부.
15. 파라다이스 복지재단(1998), 편의시설 다시보기, 명작.
16. 한용호, 고필중(1999),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디자인, 한국문원.
17. 황용운(2002), 중소도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2(2).

(接受: 2004. 3. 22)